



명쾌한 수다

차로 위협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될까요?

사건 개요

A씨는 운전 도중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는 B씨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B씨는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차를 조금씩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B씨가 뒤로 물러난 만큼 운행하는 것을 반복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하며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관련 법률과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에 관하여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차 앞에서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전진시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서의 폭

행이나 그 고의,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 9302 판결).

따라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가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판결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